

2009. 09. 21(월)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9. 8.

2. 개정이유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현행 26개 조항의 조례를 6장 26개 조항의 체계로 하여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7

조부터 제16조까지),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 부터 제 22조까지), 체육시설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보칙 (안 제25조, 제26조)으로 구분함.

- 다. 조례의 목적을 일부 보완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보완·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여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라.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원화하되,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5시에 조기개장토록 함(안 제6조).
- 마.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용 또는 연습목적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같음토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7조).
- 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11조 및 별표).
 - 전용사용료, 이용(연습)료, 입장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등 6가지 유형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종전의 사용료 규정을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종합운동장(천연 잔디)과 보조경기장(인조 잔디), 실내체육관 3개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변경함
 -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 중 종합운동장(천연잔디)과 보조경기장(인조잔디)의 사용료를 1일 1회 3

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신설함

-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전액 면제 대상과 100분의 30 경감대상으로 세분화하고, 국가유공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함(안 제15조).

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대상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와 일부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하되, 사용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미사용 신고 시기에 따른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16조).

자.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와 위탁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차. 그 밖에 사용료 개정에 따른 적용례, 사용허가 및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2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0조, 제1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행정대집행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9. 8. 11. ~ 8.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창스포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이 조례는 총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제한, 운영시간,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위탁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사용료)제1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의 체육시설에는 종합운동장(천연 잔디), 보조경기장(인조 잔디), 실내체육관만 규정되어 있고,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궁도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준과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 규정을 두어야 함으로 별표의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에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부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마이크 및 확성기, 난방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애드벌룬 등)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용료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3조(관리위탁)제5항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 “3년” 을 “5년”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2009.7.1, 일부개정]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09. 6.19] [법률 제9490호, 2009. 3.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타법개정]

제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1.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파견 및 국외체육지도자의 국내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 및 정보의 지원 기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5.25, 2008.2.29>

1. 1급 경기지도자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2.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당해 대학이나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

제23조(경기지도자) ① 경기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와 2급 경기지도자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2.1, 1993.3.6, 1999.2.5, 2005.10.26, 2007.5.25, 2008.2.29>

1.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2.1, 1993.3.6, 1994.6.30, 1999.2.5, 2007.5.25, 2008.2.29>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4.6.30, 1999.2.5, 2005.10.26, 2008.2.29>

1.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생활체육지도자)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

에 적합한 운동종목·강도·빈도·시간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는 업무를,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4.6.30, 1998.2.24, 1999.2.5, 2008.2.29>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2.1, 1993.3.6, 1994.6.30, 1999.2.5, 2007.5.25, 2008.2.29>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1999.2.5, 2007.5.25, 2008.2.29>

1. 운동처방전공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2.1, 1993.3.6, 1994.6.30, 1999.2.5, 2007.5.25, 2008.2.29>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삭제 <1994.6.30>
5. 삭제 <1994.6.30>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인정하는 자

⑤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4.6.30, 1999.2.5, 2007.5.25, 2008.2.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6.30, 1998.2.24, 1999.2.5, 2005.10.26, 2007.5.25, 2008.2.29>

1.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2. 2급 경기지도자 또는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
3.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89.10.20]

□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양여)·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9. 4.27] [법률 제9174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기간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